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 번호	4378
----------	------

2025.12.5.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발의자: 2025. 11. 10.(월) 이돈건 의원

나. 회부일: 2025. 11. 10.(월)

다. 상정일: 2025. 12. 4.(목)

-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수정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취지

- 본 조례안은 광양시 관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에 대한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여 관광객 및 시민의 이동편리성과 지역 경기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안 제2조)

3. 검토 결과

- 본 조례안 제2조 중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특정 수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상위법은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완화 가능한 범위를 위임한 것이므로 “10대 이상 50대 미만”은 상위법이 정한 ‘50대 미만’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으며 지역 실정에 따른 합리적 입법재량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 자동차대여사업은 일정 수준의 차량 확보가 있어야 이용자의 선택권과 안전·편익이 담보되고, 무분별한 소규모 등록을 방지하는 관리상의 필요도 있습니다.
- 다만,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 ‘관광객 및 시민의 이동 편리성’, ‘지역경기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10대 이상”이라는 고정된 하한선 설정 수치는 완화보다는 제한적 조례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 대수를 규정하는 조례안 제2조 자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가 판단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수정의결(출석위원 7명)

6.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붙임 1.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378-1
----------	--------

제안년월일 : 2025.12.5.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1. 수정 이유

-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 최소 대수 수정

2. 수정 내용

- 제2조 중 “10대” 를 “20대”로 수정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10대” 를 “20대”로 수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광양시에 소재하고, 광양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u>10대</u>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p>	<p>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 ----- ----- ----- ----- --- <u>20대</u> ----- ----.</p>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광양시에 소재하고, 광양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